

12 긴급재난지원금(정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합니다.

■ 대 상 :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 : 원 / '20. 3월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88,344	63,778	-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6인	326,561	349,099	343,406
7인	402,261	426,790	437,059
8인	437,059	462,265	471,545
9인	471,545	495,914	519,517
10인	519,517	544,044	602,065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지원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가구원수 기준은 '20. 3. 29.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은 향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Ⅰ 누가 받을수 있나요?

- ☞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신청 가구원에 부담된 '20.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적용 제외**를 검토중이며, 관련 기준은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 ☞ 긴급재난지원금의 선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 : 원 / '20. 3월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88,344	63,778	-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6인	326,561	349,099	343,406
7인	402,261	426,790	437,059
8인	437,059	462,265	471,545
9인	471,545	495,914	519,517
10인	519,517	544,044	602,065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Ⅰ 대상자 선정 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후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합니다.

공단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 → ② 제도소개 → ③ 건강보험안내 → ④ 보험료 → ⑤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⑥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전화번호 : 1577-100

|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 '20. 3. 29.(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지원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개인별 지급인가요? 가구별 지급인가요?

- ☞ 기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또한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봅니다.
- ☞ 다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합니다.

|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 중복수급 가능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주형 긴급 생활지원금(10만원)
 - ②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원)
 - ③ 파주형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100만원)
 - ④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금(가구별 40만원~192만원)
 - ⑤ 아동양육 한시지원(아이돌봄 쿠폰, 40만원)

| 신청방법과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